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차별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기업의 사업에 주정부의 모든 기관과 당국이 관련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

주지사, 피해자의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 등에 근거한 폭력적인 행동을 법적 방어권으로 간주하는 “게이 패닉(Gay Panic)”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

*연방 정부가 중요한 시민 권리의 보호를 이전 수준으로 역행하는 시기에 모든 주민을 위해
공평함과 정의를 보장하는 길을 선도하는 뉴욕*

*주지사 발표, [여기](#)에서 유튜브(YouTube)로, [여기](#)에서 텔레비전 영상 품질(h.264, mp4)로
시청 가능하며 [여기](#)에서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로 청취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의 시민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차별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기업의 사업에 주정부의 모든 기관과 당국이 관련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민이 다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게이 패닉(Gay Panic)” 방어권의 사용을 금지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의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 또는 발견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여 죄책감을 더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뉴욕시의 제17회 연례 인권 갈라(17th Annual Human Rights Gala) 행사에서 이와같이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의 진보를 되돌리기 위해 연방 정부가 시도하는 모든 조치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다양한 나라 출신의, 다양한 종교 및 다양한 인종의 국민을 통합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장 커다란 강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일깨워주는 다양성을 환영합니다. 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바탕으로, 뉴욕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차별에 맞서 우리의 강력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이며, 단순히 우리 중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호해 온 유산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 HRC)의 JoDee Winterhof 수석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의 인권 캠페인(HRC) 설문 조사에 따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LGBTQ)의 약 삼분의 이가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청 계약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Cuomo 주지사님은 다시 한번 성적 소수자(LGBTQ) 인력을 보호하는 일을 돕고 뉴욕 주민의 세금이 차별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의 노력과 성적 소수자(LGBTQ) 평등을 향한 전진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지속적인 공약에 감사드립니다.”

Trump 행정부는 성전환자들이 미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금지 시켰고, 학교에서 젊은 성전환자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전국적으로 제거했으며, 성적 소수자(LGBTQ) 공동체를 미국 노년층 대상 전국 설문 조사(National Survey of Older Americans) 대상에서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에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인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에 따른 피임약 보급 의무 조항(contraceptive coverage mandate)을 폐지했습니다. 이 조치로 고용주와 단체들은 차별 금지법(nondiscrimination law)을 광범위하게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성적 소수자(LGBTQ) 권리의 취약성이 증가했습니다.

차별을 영구화하면서 용인하고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조치에 맞서, 뉴욕은 다시 한 번 뉴욕주 전 지역에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Cuomo 주지사는 성소수자(LGBT) 권리를 옹호하는 국가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주지사는 사회의 가장 커다란 불평등 중 하나를 종식시킬 시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역사적인 결혼 평등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성전환자들이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법규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관 고용주, 주택제공업자, 기업인, 채권자 및 기타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불법이며 뉴욕주 어디에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음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2017년에 주지사는 증오범죄대책팀(Hate Crimes Task Force)을 구성하고 개인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 범죄를 신고하는 직통 전화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성적 지향이나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의 불임 치료를 보장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상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공개적으로 동성애 판사를 처음 지명했습니다.

모든 주민을 위해 뉴욕에 대한 평등과 정의를 계속 지지하도록, 주지사는 차별을 지지하는 단체와의 모든 주정부 계약을 금지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또는 성적 지향을 감지 또는 폭로하면서 비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과 Daniel O'Donnell 뉴욕주 하원의원이 이전에 추진한 법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주지사는 성전환자 학생 보호를 거부하는 학교는 모두 주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77 호

행정 명령

차별을 지지하는 단체들과의 주정부 계약 금지

뉴욕주가 자유, 정의, 평등을 위해 싸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라도 시민의 권리 및 시민과 주민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1945년에 뉴욕이 완전히 생산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제정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되는 자랑스러운 영예를 차지했기 **때문에**,

뉴욕주가 (1) 학교에서의 차별, 괴롭힘, 왕따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존엄성법(Dignity for All Students Act)을 제정하고, (2) 성 정체성, 성전환 상태 또는 성별 불쾌감에 근거한 괴롭힘 및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하며, (3) 건강 보험사가 성 정체성에 근거하여 보험 적용 여부를 차별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보호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유산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왔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근본적인 시민 권리의 보호를 이전 수준으로 역행하고 개인을 차별과 괴롭힘에서 보호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뉴욕주가 연방 정부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시민과 주민의 차별을 금지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계속 방어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 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이 주정부가 스스로 “연방 정부 권리 이외의 권리에 대한 불가침의 자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헌법이 이중 자주권 체제를 수립했다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뉴욕 주민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이 뉴욕주 정부의 핵심적인 주권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ANDREW M. CUOMO**, 본인은 뉴욕주 지사로서 뉴욕주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여기에서 명령합니다. 뉴욕주 정부는 뉴욕 주민의 민권 및 자유에 대한 차별 또는 제한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단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산하 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1. 정의.

A.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ies**)”은 (i) 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 및 (ii)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을 제외하고 주지사가 회장, 최고 경영자, 이사회 이사 다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익 법인, 공공 기관, 이사회, 위원회 등을 의미합니다.

2. 뉴욕주 정책.

(a) 뉴욕주는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군대 복무 여부, 성별, 혼인 여부, 장애 또는 기타 보호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뉴욕은 수많은 법률, 규정, 정책 등을 제정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차별 금지 보호 대책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계속 집행할 것입니다.

(b) 이 정책은 공공재, 공공 서비스, 공공 시설, 교육 환경, 일터, 의료 서비스, 건강 보험 서비스 등의 조항과 관련하여 준수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3. 주정부 계약에서의 에이전시의 책임

(a) 성 정체성, 성전환자 지위, 성별 불쾌감 또는 위에서 열거한 다른 보호 계층을 토대로 하여 개인의 괴롭힘과 차별을 해결하지 못한 제도적 정책 또는 관행을 가진 단체와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ies**)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당 조달 절차를 변경할 것을 여기에서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ies**)에게 지시합니다.

(b)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및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은 2018년 5월 1일까지 공동으로 여기에서 설명된 제한을 받는 대상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ies**)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해야 합니다.

(c) 2018년 6월 1일부터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ies**)이 재화, 서비스, 기술 또는 건설 등을 위해 체결한 계약 또는 계약 갱신에는 상술한 바와 일치하는 구속력을 갖춘 동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ies**)은 이러한 구속력을 갖춘 동의없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재화, 서비스, 기술 또는 건설 등을 제공하는 어떠한 단체와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d) 이러한 책무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준수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4. 상술된 모든 차별 금지 보호 대책 및 지침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기존의 연방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보호 조항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협소하게 해석된 연방 행정부 해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UNSUBSCRIBE\)](#)